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	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 판뉴딜</b>
급용감독원	보도	2021.9.15.(수) 석긴	<u>'</u>	배포	2021.9.14.(화)	규제혁신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(02-2100-2630)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 범 준(02-3145-5700)		담 당 자		변 후 정 사무관 (02-2100-2636) 정 재 승 팀 장 (02-3145-5697)	

제 목 : 9.15일(수), 새롭게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.

- □ 금융위·금감원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시행('21.9.25.)을 앞두고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,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
  - (일시) '21.9.15(수) 15시 00분(소요시간 30분~40분 내외)
  - (방송채널) 줌(Zoom)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
    - \* 줌 아이콘 클릭→"회의참가" 클릭→회의 ID에 "375 286 9302" 입력하고 "참가" 클릭→회의 암호에 "0000" 입력하고 "회의참가" 클릭
    - ※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(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제12조)
    - (정의)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
    - o (취급종목) **예금성, 대출성, 투자성, 보장성** 상품
    - o (등록요건) 현행 「**자본시장법」상 (비독립)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**(인력요건, 자기자본요건, 사회적 신용, 임원 결격사유 등)하게 설계하되, **독립성**(판매업 경영금지)을 요구
- □ 등록 절차·요건 등에 대한 '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'은 금융위·금감원 홈페이지\*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(☞별첨)
  - \* 금융위: www.fsc.go.kr, 정책마당 > 정책자료 >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: www.fss.or.kr, 업무자료 > 금융소비자보호법 > 금소법 업무자료
- □ 온라인 회의시 안내드릴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응답(Q&A)은 설명회 종료 이후 금융위·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- □ 한편,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접수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\*을 미리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☞붙임)
  - \* "(붙임) 독립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(Q&A)" 참고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##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## 독립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

- 1. 기존에 별도의 등록/인가 없이 금융상품 자문업을 수행하던 경우에, 9/25일 이후에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수행할수 없는 것인지?
- □ 금소법이 시행되는 9월 25일 이후에는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없음
  - → 개인·법인을 불문하고, 9월 25일 이후에는 법인 형태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 자문업을 수행해야 함
  - 2.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금소법에 따라 대출이나 보험 분야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 투자상품 자문에 대해서도 독립성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건지?
- □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문업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\*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
  - \* 금소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독립성 요건
    - ①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
    - ②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지 않을 것 등
  - ➡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도 금소법상 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상품에 대해 독립성을 확보해야함

- 3. 금소법상 예금성, 대출성 등 성격이 다른 상품을 여러 가지 자문하려면,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?
- □ 금소법에서는 **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**는 취급하려는 **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**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.

취급상품 유형	자기자본 금액		
예금성·대출성·보장성 상품	각 1억원		
 투자성 상품	2억 5천만원 <sup>*</sup>		

\*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의 등록업무 단위 5-21-1에 해당하는 투자성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: 1억원

등록업무단위	투자대상자산의 범위					
5-21-1	집합투자증권, 파생결합증권, 환매조건부 매매, 시행령 제6조의2제3호에 따른 투자대상					
	자산,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					

- □ 또한, 금융상품 유형 중 **둘 이상을 함께 취급**하는 경우에는 **각** 금융상품에 따른 자기자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갖춰야 함
  - 다만, 대출성·보장성·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면서 예금성 상품을 추가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, 예금성 상품에 대한 별도의 자기 자본을 갖추지 않아도 됨
  - ※ (예시) 대출성 상품과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최소 자기자본 금액은 2억원 / 예금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최소 자기자본 금액은 1억원